

의안번호	제539호
의결 연월일	2013년 10월 17일 (제324회)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양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9월 16일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양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9월 16일
발의자 : 김양희, 장선배, 노광기
박종성, 손문규, 최미애
최병윤 의원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(안 제36조의2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 수반(비용추계서) : 해당 없음
- 집행기관 협의 여부 : 여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u></p> <p><u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여성발전기본법

제29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